

## CCITT SG III 회의 보고

\* 구 현 모

### 목 차

1. 서 론
2. SG III 회의의 성격과 구성
3. 회의의 세부 내용
4. 금후 회의일정 및 과제
4. 부 록

---

CCITT 국내연구단 SG III 의장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전략경영연구부 전임연구원



## 1. 서 론

본 보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36개 국가로 부터의 106명의 참석자와 4개 국제기구로 부터의 옵저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CCITT SG III의 전체회의와 WP III/3(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의 서비스요금 및 정산 원칙)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SG III은 일반 요금원칙 및 국제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문제를 논의하는 연구위원회로서, 통신분야의 급격한 발전과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분야를 125년의 전통을 가진 ITU이외의 GATT나 OECD, EC 및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지역표준화 기구에서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ITU가 자신의 위상을 확실히 하기위해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위원회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WATTC 88의 정신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하여왔던 국제전용선 이용제도에관한 권고(Recommendation D. 1)의 신속절차(Accelerated Procedure)의 적용을 결정하는 금번회의에 ITU의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제 11차 회의로 국내에서는 한국통신에서 3명, 한국데이터통신에서 1명이 참석하였으며 차기회의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 2. SG III 회의의 성격과 구성

### 가. 성격

CCITT에서 유일하게 기술적 표준외에 경제적 법적측면의 규제(REGULATORY)사항까지 다루고 있는 연구위원회로서 회원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만큼 규제측면이 강한 관련권고의 경우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려워 제정,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CCITT내의 다른 SG와는 달리 정부 대표가 사업자와 함께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SG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0차회의에 체신부에서 참석한바 있다.

## 나. 구성

SG Ⅲ은 7개의 WP(Working Party)와 5명의 특별 보고자 그리고 4개의 지역 요금 그룹으로 구성되어, 관련 과제 및 지역 요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WP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비중이 적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특별 보고자를 지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지역 요금 그룹은 각 지역내에 적용 될 수 있는 요금 및 정산에 관한 원칙을 연구 하고있다. 각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실무작업반 (WP)

명 칭	담당 과제	관련 사항	의장
WP Ⅲ/1	과제 1-3, 5	국제전용선 이용제도, 요금	H. Heling
WP Ⅲ/2	과제 4, 23-25	국제전용선(디지털) 요금	J. O. Boyle
WP Ⅲ/3	과제 6-8, 10-12	테레스, 전보, 데이터 통신	D. Casey
WP Ⅲ/4	과제 16-18	국제전화 및 TV 전송요금	J. Payman
WP Ⅲ/5	과제 19-20	국제 위성, 해사 이동통신	W. Lucas
WP Ⅲ/6	과제 21-22	ISDN의 요금 원칙	E. J. Exton
WP Ⅲ/7	과제 29	요금 핸드북의 작성	H. Traore

### - 특별보고자 (Special Rapporteur)

과제번호	연 구 과 제	특별보고자
20, 26, 30	WATTC의 반영방법과 일반 요금 원칙 연구	송평환화(일)
9	이종 공중데이터망의 상호접속시 요금원칙	"
13	국제 공중 팩시밀리 서비스 요금 원칙	증산성(일)
14	국제 텔리텍스 서비스의 요금 원칙	W. Book(독)
15	비디오텍스의 요금 및 국제 정산원칙	P. Sibietta(프)
31	통신통계관련 C.1 원고의 개정	

## - 지역 요금 그룹

명 칭	연 구 내 용	의 장
TAS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요금 연구	N. Virata(필)
TEUREM	유럽, 지중해 지역의 요금연구	G. Repigi(프)
TAL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요금연구	
TAF	아프리카 지역의 요금연구	J. Kebede

## 3. 회의의 세부 내용

### 가. SG III 회의

#### 1) 제, 개정 권고초안의 처리건

D. 1 권고를 비롯한 11개 제정 혹은 개정 권고초안( D. 1, D. 10, D. 60D. 67, D. 79, D. 192, D. 197, D. 250, D. 300R, D. 306R, D. 307R)에 대하여 신속절차(Accelerated Procedure)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 권고안 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D1 권고 개정

싱가폴의 징수요금에 대한 권고안에서의 강제성을 떤듯한 언급은 각 국가의 권리와 침해하는 것으로 징수요금은 국내문제이어야 한다는 요지의 정식기고문 제출로 지난번회의의 초안 중 6.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Charging for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s are recognized as a national matter. However, generally aharges levied for international private lease circuits are should be cost oriented and generally established on a flat rate basis."

이와같이 변경된 권고안은 우편투표에 붙여져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며, 영국같은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것을 시사하였다. 국내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D.1 권고의 개정초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와 관련 부서에서 참고토록 하였다.

○ D.192 (Service telecommunication) 권고

지난번 회의에서 완성된 초안이 공중 서비스(Bureau Service)까지 포함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호주의 기고문과 권고초안이 실제 운영상의 제(발신국과 목적국이 합의를 하였더라도 중계국이 Service Telecommunication에 대하여 과금할 경우 이를 식별할 설비 및 S/W의 부족등의 문제)를 지적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신속절차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결국 호주의 지적은 권고 초안에 반영이 되었으나 중국의 주장은 반영되지않자, 향후 중국은 Service Telecommunication에 대하여 징수요금도 걷지않을 뿐더러 정산요금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후 신속절차 적용에 동의하였음.

○ D. 60에 대하여는, 중국이 2.1항에 대하여 미국, 카나다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Reservation신청

○ D. 300R(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국제전화 정산요율에 관한 원칙)의 경우 당 국가인 유럽 국가간에 96년까지의 정산요율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어 92년도의 정산요율만을 합의한 형태로 고친후 신속절차 적용에 합의.

○ D. 79, D.250은 약간의 편집을 거친후, 나머지 D.10, D.67, D.197, D.306R, D.307R은 변경없이 신속절차 적용키로함.

2) 차기회의의 신속절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람을 결정한 권고안

금번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어 공람을 결정한 권고는 국제 전용선에의 One Stop Shopping의 적용을 위한 권고와 D.35 (국제 공중 MH Service에서의 과금 원칙)가 있었다.

3) 국제정산요율(Accounting Rate)에 대한 토의건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된 국제 정산 원칙 및 체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의장은 국제정산요율에 관한 문제가 CCITT이외의 기구 즉, OECD, EC등과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이미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CCITT내에서도 새로운 과제로 성립시켜 논의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 대표는 국제 정산 방법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과제 16(Q. 16)으로 이미 과제화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국제정산요금의 수준 까지 논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과제 16(Q. 16)으로 대체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기존의 과제에서 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이 결정과는 달리 의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4) 국제 전용선에서의 One Stop Shopping 관련 권고안의 제정건

세계 경제의 성장, 국가간 협력 및 교역량의 증가, 국제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국제 전용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사용자의 요구 또한 다양하여 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유럽내 국가들, 미국, 일본등간에 상호합의로 국제전용선개설절차, 요금의 납부, 전용선에 대한 보수 요청, 관련 정보의 획득을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One Stop Shopping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따라서, CCITT에서는 실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권고안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국가들도 O.S.S를 도입할때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전용선에서의 O.S.S에 관한 권고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O.S.S관련권고에 대한 논의는 1989년 10월의 WP III/2에서 시작되어 1990년 5월 WP III/2에서 O.S.S에 대한 실행 원칙 및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 권고 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 11월 SG전체회의에서 O.S.S의 제공에 있어서 자세한 절차는 국가간 합의에 의하도록하고, 원칙만을 제시한 미국의 기고문이 제출되었으며 1990년 11월회의에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양자간의 입장만을 확인한후 금번 1991년 3월 회의에서 다루기로 한바 있다.

금번회의에서 관련기고문으로 미국의 COM III - 74, 이탈리아의 자연기고문 40, 프랑스의 자연기고문 42가 제출되었으며 최초의 권고초안 (COM III-R-12에 수록 되어 있음)

과 미국의 COM III-74를 가지고 재 구성한 프랑스의 자연기고문 42를 기본문서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 <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논 평
제 목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One-stop Shopping" (OSS) for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s.	
전 문 (前 文)	권고안의 목적 OSS의 정의 및 적용범위 OSS의 적용상의 일반적 지침	권고안이 User Guide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가의 여부가 논의 되었음
용어의 정의	Coordinaton Adminstration Partcipating Admiinstration Custommer에 대한 용어 정의	Warranty Agency를 정의 할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서비스내용규정 (Features)	O. S. S. 협정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고객은 그중 가능한 것들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Single-Point Orderng Single-Point Billing Coordinated Provisioning Single-Point fault reporting	Coordinatiion Provisioning을 좀더 구체적 규정하려는 미국안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음
이용조건	이용조건은 상호 다르게 합의하지 않은 한 각 주관청의 이용조건 적용  Participating 주관청에의 Customer	Customer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가능케 함.	
Single-point Billing	과금절차 미납된 요금에 대한 책임한 계와 의무 Single-Point Billing의 철회, 부가요금 요구등에 관하여 설명	부가요금의 요구, 과금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것에 대해 미국측의 불만이 있었음
기 타	주관청간 정산, 서비스의 해지, 공제에 대한 설명,	

이번 회기내에 O.S.S관련 권고를 제정하려는 의장단의 강력한 의지로 TD12(Rev. 2)의 내용대로 Accelerated Procedure 적용을 위한 공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은 충분한 검토를 한후 새로운 기고문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의장단의 생각대로 다음 SGⅢ Plenary Meeting(9월)에 Accelerated Procedure 적용을 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우리의 경우 국제전용선에서의 O.S.S는 미국등으로부터 제의를 받아놓고 있는등 O.S.S에 대한 각국의 요구가 증대할것에 대비하여 적용여부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나. WP Ⅲ/3 관련 사항

##### 1) EDI 관련 권고의 검토 건

SGI은 EDI Message Handling Service를 규정하는 권고 F.435를 Accelerated Procedure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받고 있어서, 이에 따라 EDI MH Service의 store-

and-forward basis에 의한 Message Handling System 즉, 발신자에 의해 발신된 메세지가 MHS의 주요부분인 MTS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반영하는 정산원칙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WP/3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SGⅢ은 MH Service에 대한 정산원칙 권고(D.36) 제정을 위한 우편투표를 진행중에 있으며 권고 D.35(국제 공중 MH Service의 과금 및 정산)을 어떠한 형태의 MH Service에도 적용할수 있는 과금 원칙에 관한 권고로 개정하여 Asselerated Procedure 적용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공람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EDI를 포함한 X.400권고안의 1988년과 1992년 Version에 대응하는 정산원칙을 다루는 권고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이번회의에서 시작하였으며, 이 작업은 WP의장이 제출한 TD 310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번회의에서는 각 구체적 MH Service의 응용된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검토하기 이전의 일반적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키로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응용형태에 대한 것은 향후, 작성이 되는대로 Annex형태로 부착키로 하였으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음회의에 다시하기로 하였다.

#### ○ <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논 점
적용범위	EDI뿐만아니라 MH Service에서 파생가능한 응용서비스들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함.	각서비스 별 권고안 작성/포괄적 권고안 작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권고안의 목적	ADMD 및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산에서의 간편성과 정확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서비스내용	F. 400 및 X. 400에서 규정된 서비스	
정산모델	<p>MH Service에 포함된 여러가지 cost를 정산을 위해 5개의 cost element로 나누어 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rvice Access Cost</li> <li>- 발신 ADMD에서의 Processing cost</li> <li>- ADMD간의 Network cost</li> <li>-착신 ADMD에서의 Processing cost</li> <li>- Delivery co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에 필요한 DATA기록</li> <li>- Foregoing accounting의 가능성</li> <li>- Reverse Charging을 포함 할 수 있는지의 여부</li> <li>- Notification transmission에 대한 정산 문제</li> <li>- Accounting rateshare에 관한 원칙 등</li> </ul>
정산원칙	정산원칙 적용을 위한 가정, 일반원칙 각각의 cost element에 대한 정산 구체적인 서비스별 적용되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tical User facilities</li> <li>- ADMD에 속하는 UA로의 Delivery</li> <li>- PRMD로의 Transfer</li> <li>- Telex Delivery 등등</li> </ul>
정산공식	서비스에 대한 정산원칙 제시 D. 36의 내용과 유사함	

## 2) X. 500에서의 Directory Service 관련 논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CCITT 권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계속지적되어 왔다. 즉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서비스를 권고안에 반영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의 구체화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노력은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X. 500에 관한 소개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X.400에 관한 권고안들이 검토됨에 따라 다음 형태인 X.500에서의 Directory Service에 대한 개념을 알림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정 의	A single global directory system to support messaging and many other communications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tributable</li> <li>· Multiple Application</li> <li>· Behavior user-and-location independent</li> <li>· Global name space</li> <li>· Query</li> <li>· User</li> </ul>
중요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A (Directory User Agent)</li> <li>· DAP (Directory Access Path)</li> <li>· DSA (Directory Service Agent)</li> <li>· ADMD (Administration Directory Management Domain)</li> </ul>
Directo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sign Agreement</li> <li>· Distributed operations</li> <li>· Information sharing</li> </ul>
관련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ount &amp; Settlement</li> <li>- Non-Charging/Accounting model 적용가능성</li> <li>- Possible assymetry</li> <li>- Charging을 위한 Data 수집</li> <li>- Settlement issues of Replication</li> <li>- Accounting for Resource Consumption</li> </ul>

X.400에서의 MH service application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X.500 Directory Service의 과금 및 정산 원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생소한 서비스로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여겨진다.

### 3) 기타 논의 사항

- Charge Card Service 및 TA Service에 관한 내용과 UPT 관련 내용
-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의 공중 데이터 통신에 관한 내용

## 4. 금후 회의일정 및 과제

차기 회의 관련으로는 전용선에서의 O.S.S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견의제시도 할수 있어야 할것이며 국제 정산 체계에 대한 검토는 정산 요율의 수준에 대한 검토부분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필요하다면 정산 요율의 수준까지 포함하여 검토할것을 다음 회의에서 요구할수도 있을것이다. 특히 차기 회의에서는 5월의 ISDN Expert meeting의 결과와 함께 그 동안의 ISDN분야의 진전을 반영한 논의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지므로 ISDN 요금 전문가의 참석이 요망된다.

금번회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인 신속절차를 적용키로한 권고들과 전용선에서의 O.S.S 관련 권고 그리고 정보통신사업 부분에 필요한 권고는 충분한 내부전파가 이루어져서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국제 전용선 이용제도에 관한 권고 (D.1)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조항에서 논의된 사항을 국내에 반영할것인가의 여부, 반영 범위, 반영 절차에 대해서는 체신부를 위시한 사업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 5. 부 록

국제(대륙내 및 대륙간)사설 전기 통신 회선의 전용에 관한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THE LEASE OF INTERNATIONAL(CONTINENTAL AND INTERCONTINENTAL) PRIVATE TELECOMMUNICATION CIRCUITS AND NETWORKS)

### 전 문 (Preamble)

이 권고는 국제 전용선의 개설, 운영과 사용에 있어 국내 법규 하에 주관청, 또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특별취급조건(Special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제회선망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조건을 명시한다. 이 권고의 부기 A에 수록되어 있는 도표는 국제 사설 전용회선의 규정과 전문용어에 관한 권고M.1010(1)로 부터 인용하여 과금조건에 맞게 보충한것이다. 이 도표는 국제 사설 전용 회선 및 국내 연장 회선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한다.

### 1. 일반원칙

1.1 국제전용선 서비스는 고객과 회선종단 국가의 각 주관청간의 전용 협정에서 설정된 기간과 조건하에서 고객이 국제 전기 통신회선을 전용하도록 한것이다. 고객은 국제 전용 선을 연결하여 전용망을 구성할 수 있다.

1.2 국제 전용선 서비스 제공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국내법규
- b) 본 권고 사항
- c)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에 참여하는 주관청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조건 및 기간
- d) 기술진보와 현대적 운용 및 관리 방법의 이용을 촉진 시키는데 바람직한지의 여부
- e) 고객의 특정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1.3 주관청은 주관청 혹은 이의 대행 사업자(subsidiary)가 전용선 고객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공평한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 전용회선과 전용망이 공중(public)에게 사용될 때 해당 주관청은 관련 CCITT 권고를 장려하여야 한다.

1.5 전용회선 서비스는 국제 관계에 있어 중요하며 주관청들은 계획에 전용회선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2. 임대조건(Condition of Lease)

2.1 공중망 또는 사설망에 대한 기술적 피해를 방지하여 주관청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더욱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을 사용 또는 전용회선망을 구성하려는 고객은 해당 주관청에게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2.2 망에의 기술적 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설망의 안전성을 방어하기 위해 사설전용회선에 접속된 장치는 각 관계 주관청이 정한 기술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장치의 형식승인을 신속히 하는데 협의가 도움이 될 경우 주관청은 타 주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3 일단 사설 전용회선이 설정되면 전용회선의 양측 단말에 있는 국제 센터가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단말 국가의 전용기간동안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센터의 특정 직원이 필요한 감시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2.4 주관청은 사설 전용회선망을 구성하는 접속회손상의 엔드-투-엔드 전송 품질에 대하여 여의한 책임도 질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이와는 달리 전용회선망을 구성하는 접속된 회선의 전송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관청은 그들이 제공하지 아니한 통신망의 부분이나 또는 그와 같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대에 적용 가능한 기술조건에서 운용되지 않는 통신

망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2.5 주관청은 회선이 적절한 운용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험 조정 및 정기 유지보수를 수행하기위하여 사설 전용회선의 운용을 잠정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청은 고객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자가 상호 협의할 수있는 시간에 운용을 중지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특별한 상황하에서(예를 들면 회선의 계속 운용으로 긴박한 기술적인 손상이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주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제전용회선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및 상황하에서 가능한 많은 통지와 함께 회선을 철회하여야만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복구되어야만 한다.

2.7 국제 전용회선의 임대에 관한 규정이 지켜지도록 하기위하여 주관청은 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8 회선 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주관청은 해당 전기 통신 회선의 전용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관청은 이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에 관하여 즉시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9 본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문이 일어날 경우, 주관청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고객과 의논한다.

### 3. 사용 조건 (Condition of Use)

3.1 국내법과 관련 주관청간의 합의 하에 고객은

3.1.1 전용회선을 통신채널로 분할 할 수 있다. 이 채널들 또는 그들중의 일부는 동일 고객에 의하여 임대된 다른 회선을 이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

3.1.2 재 임대 할 수 있다.

3.1.3 국제 전용회선 또는 국제 전용망을 이용하여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TU회원국들은 지정된 사업자에 의하여 어떤 통신 서비스를 특별히 또는 배타적으로 제공 할도록 지정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특별 허가조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

3.2 고객이 그들의 전용회선의 설비와 운용방식에 대한 실직적인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객은 주관청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

3.3 전용회선을 통한 고객과 사용자간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통신은 해당국가에 적용되는 국내법규에서 제공되는 조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

#### 4. 공중망에의 접속

4.1 회선 또는 망의 한쪽에서의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망과 공중망과의접속은 국내 법 규하에 허용되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서비스의 배타적 제공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관련국가 주관청간에 합의 가 이루어지면 양측 회선 종단에서의 공중망과의 접속은 허용될 수 있다.

이들 접속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구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4.2 주관청은 공중망의 이용자와 전용회선간의 발착신 호의 전송 품질을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5. 전용기간, 취소

5.1 임시 서비스에 관한 아래 5.5의 규정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전용기간은 1개월이다.

5.2 뮤계에 의하여 임대는 쌍방중 일방이 취소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통상 취소개 시일 7일전에 취소를 통지해야 하나, 주관청과 고객은 통지시기를 달리 합의 할 수 있다. 최초 1개월 이후 2개월 미만에 대한 요금은 아래 5.4.1 및 5.4.2에 따라야 한다.

5.3 전용료의 통상 1개월전에 선불하여야 한다.

5.4 임대기간을 계산할때의 1개월은 역월(Calender month)로서의 1개월을 의미한다. 이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고객에게 회선이 제공된 날은 전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선을 회수한 날은 만 하루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회선 운용에 고객이 준비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나 사용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관청이 서비스 개시일을 결정하는데 특수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선이 이용 가능한 날의 익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달 월말까지 일수를 계산한다.
- 그 이후로부터 역월수를 계산한다.
- 마지막 달의 서비스 일수(日數)를 계산한다. 이때 회선의 회수일을 포함시킨다.

#### 5.4.1 과 금 ;

- 매 1개월에 대해서는 월정 요금을 받는다.
-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월정 요금의 1/30에 해당하는 일정(日定) 요금을 받는다.

#### 5.4.2 예: 표 1/D.1

표 1/ D.1

가용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임대기간	유료기간	요금
10월 30일 ~ 12월 15일  10월 30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0월 31일 = 1일 11월 = 1개월 12월 1일 ~ 15일 = 15일	1개월16일	1月定額+16/30月定額
11월 30일 ~ 1월 15일  11월 30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2월 = 1개월 1월 1일 ~ 15일 = 15일	1개월15일	1月定額+15/30月定額
1월 4일 ~ 2월 10일  1월 4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월 5일 ~ 1월 31일 = 27일 2월 1일 ~ 2월 10일 = 10일	37일	37/30月定額

5.5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시 임대 서비스가 인정될 수 있다.

5.5.1 임시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1일이란 연속 24시간을 의미한다.

회선이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부터 회수될 때까지의 총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어 전용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총 24시간으로 나눈 나머지는 절상하여 하루로 계산한다.

예: 회선 사용가능시간 6월 1일 09:00시, 회수기간 6월 4일 09:00시;  $4 \times 24$  시간 즉 4일분을 과금한다.

회선사용가능시간 6월 1일 09:00시, 회수시간 6월 5일 11:00시; ( $4\text{일} + 2/24\text{일}$ ) 즉, 5일분을 과금한다.

5.5.2 이 경우(임시전용)의 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a) 전용 첫날에 대하여 : 월 임대료의 20%

b) 두번째 날로부터 매일 : 월 임대료, 즉 월 임대료 이상의 되지 않는 경우에 고객에 의해 지불되는 월당 총액의 3.33% ( $1/30$ )

5.6 상기 5.1과 5.5에서 고려한 전용은 전시간 전용 즉, 1일 24시 동안의 전용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 주관청은 경우에 따라 시간별 전용을 협용할 수도 있다.

## 6. 과금 원칙

6.1 원칙적으로 과금은 국내 문제이지만 국제 전용회선에 부과되는 요금은 비용지향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액요금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6.2 단말국가는 국제 전용회선의 국내 연장회선에 대하여 이를 국가의 주관청이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과금한다.

6.3 공중망과의 접속시, 전용회선요금에 덧붙여 주관청은 공중망 사용에 대하여 일반요금(Normal Rate)을 징수할 수 있다. 만일 전용회선에 의한 공중망과의 연결이 해당 주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 비용을 부담케 한다면 부가적인 원가 관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4 사설전용회선이 중계국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인정된다.

6.4.1 양단말 국가의 주관청은 자국에 거주하는 고객으로 부터 국제 사설 전용회선의 임대료중 자국에 대한 요금만을 징수한다.

6.4.2 관계 주관청들간의 쌍방 협정에 의하여, 두 단말 주관청중 한 주관청이 사설전용 회선에 대한 임대로를 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주관청은 국제 요금 정 산서를 통하여 타단말 주관청에게 지불해야할 요금을 타 주관청의 이수요금란에 기입한다.

6.5 1개 또는 2개이상의 국가를 경유하는 국제 전용회선은 모든 중계국에 고객이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중계국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회선처럼 과금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중계국내의 회선에 고객이나 이용자의 단말기가 접속된 경우는, 통상과 금을 위해서 그 회선을 별개의 회선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각 단말국은 각 개별 회선에 대하여 과금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관청은 아래 6.7의 규정을 참작하여 다른 과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관청 상호간에 합의 할 수 있다.

6.6 전용회선이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중계국을 통과할 경우, 단말 주관청들은 중계국 주관청에게 지불해야 할 요금의 정산 및 징수 방법에 대하여 중계 주관청(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6.7 사설전용 회선망을 구성하는 일련의 회선을 임대한 경우, 관련 단말 및 중계 주관청은 사설 전용 회선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합의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는 가능한 한 가장 양호한 과금 조건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특별한 경로설정을 위한 추가 요금

7.1 고객이 주관청이 계획한 것과 다른 특정 경로 설정에 의해 회선을 제공하도록 주관 청에 요구한다면, 주관청은 포함된 추가비용을 고려한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다양성 또는 보안을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 적용시킬것이다. 그러나 기존 회선이 적절한 CCITT 권고에 따른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8. 인터럽션에 대한 공제

8.1 고객이나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사설 전용 회선의 인터럽션시, 다음과 같은 초기 인터럽션 시간이 있었다면 그 고객에게 통상 이를 공제해주어야 한다.

- 연속적으로 180분 이상 동안 대륙 회선의 인터럽션 :
- 연속적으로 60분 이상 동안 대륙간 회선의 인터럽션 :
  - a) 고객이나 이용자는 어떠한 인터럽션이나 운용고장이라도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관청이 이미 알고 있는 설비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b) 고객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조건은 각 관계 주관청의 관례와 일치하여야 한다.
  - c) 공제액 계산을 할때 보통 인터럽션 시간은 신고 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관청이 설비의 장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않은 경우에는 장애의 시간이 공제액 계산을 위한 시작으로 간주된다.

8.2 상기 8.1에서 언급한 초기 인터럽션 시간의 각 1시간씩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의 연속적인 각 1시간 및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시간에 대한 공제액은 전시간 임대료의 1/24에 해당 되어야 한다.

상기 5.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시간별 전용회선의 경우, 인터럽션에 대한 공제는 1일 전용 시간수에 비례되어야 한다.

8.3 인터럽션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할 때, 1개월은 30일로 간주한다. 1개월 미만의 전용인 경우, 1일 전용 요금은 총 전용료를 전용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8.4 주관청은 HF무선 회선의 바람직하지 못한 전파(傳播)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인터럽션에 대한 공제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8.5 원칙적으로 아래 8.7의 규정을 제외하면, 인터럽션이 어디에서 발생하던지 고객들이 이 운용하는 두 단말장치간의 직통회선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인터럽션이 발생된 회선이 사설 전용회선망의 일부인 경우 공제는 영향을 받은 회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주 - 일부 주관청은 사설 전용 회선의 대륙간 부분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8.6 사설 전용 회선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중 공중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공중 전기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환불요구는 거부되어야 한다.

8.7 사설 전용 회선이 인터럽션(인터럽션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되거나 운용되지 못한 이 유가 고객의 부주의가 있거나 주관청이 책임질 수 없는 고객이나 사용자측 장치에서 발생한 장애에 있다면, 여하한 임대로의 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8.8 주관청이 상기 1.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선의 시험, 조정 및 정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용 회선을 회수할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8.9 주관청은 사설 전용 회선이 접속되어 있는 공중 통신망 장치의 고장에 의한 사설 전용회선 또는 사설 전용 회선망이 운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공제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

## STUDY GROUP III

Geneva, 11-15 March 1991

SOURCE: DRAFTING GROUP

TITLE : PROPOSED REVISION OF DRAFT RECOMMENDATION ON "ONE-STOP SHOPPING"

## Draft Recommendation D.xxx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ONE-STOP SHOPPING" (OSS) FOR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S****Preamble**

- R 12 This Recommendation provides the general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one-stop shopping" (OSS) for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s (IPLC).
- R 12 "One-stop shopping" is an optional set of arrangements whereby a single administration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handles coordination between a customer and other administration(s) concerned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in order to make it simpler for the customer leasing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s.
- USA Recognizing on one hand that each administration's internal procedures and billing processes are different and on the other hand that OSS procedures should be harmonized as much as possible, this Recommendation is only a guide to be used by administrations wishing to provide "one-stop shopping". Details of procedures should be agreed among the administrations concerned.
- R 12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stop shopping" arrangement requires close coordination, among the administrations concerned at all levels,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as well as technical. The administrations concerned should endeavour to meet all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customer including the choice of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The following procedures are proposed to that end as guidelines for bilateral agreements.

**1. 2. Definition of terms**

- 2.1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only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 USA 2.2 Coordinating administration - The administration, selected by the customer, which coordinates the overall quotation, takes the order from the customer and coordinates circuit provisioning. The service associated with the OSS arrangement may include those components of a customer network that do not originate or terminate within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s operating area.
- USA 2.3 Participating administration - The administration(s), other than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involved in the actual provisioning of the requested service.

USA 2.4 Customer - The individual or entity who requests the OSS arrangement, and who signs the order forms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coordinating and/or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 3. Features

3.1 The customer chooses the coordinating and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3.2 The OSS arrangement may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features:

USA 3.2.1 Single-point ordering - This feature allows the customer to order an end-to-end circuit via one administration (coordinating administration).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initiates the order process with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and provides the customer with price quotation(s), prospective installation date(s), and the necessary order forms. Administrations should agree on the details of the OSS ordering proces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specific contact points for OSS orders.

USA 3.2.2 Single-point billing - This feature allows the customer to pay the bill at one end. The customer selects the billing administration. The bill is rendered in the currency of the billing adminis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illing will normally commence once all administrations agree that the circuit meets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excluding customer provided equipment), and has been turned over to the customer.

3.2.3 Coordinated provisioning - With this feature, as well as coordinating the installation and testing of the circuit with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acts as the single point of information for the customer during the provisioning process, keeping the customer informed of progress end-to-end, towards installation and handover of the circuit. ~~The customer may also choose to be informed by one of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USA 3.2.4 Single-point fault reporting (SPFR) - With this feature, the customer reports faults to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who coordinates fault investigation and clearance. The customer may also elect to report faults to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3.3 The customer can select any or all of the above features where available.

### 4. Terms and conditions

R 12 4.1 Each administration's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telecommunication circuit service will remain applicable unless otherwise agreed.

4.2 When the customer in the coordinating country signs the contract or the order forms with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his counterpart, then a guarantee may be needed by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Such a guarantee may, for example, be a Warranty of Agency certifying that the signing customer is duly authorized by its counterparts to place the order and to fulfill all the associated obligations.

Italy 4.3 Administrations shall be liable to their own customer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respective contracts.

### 5. Single-point billing

R 12 5.1 With single-point billing,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or the billing administration as indicated by the customer)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total amount of billed charges

(including taxes where appropriate) from the customer on the basis of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invoice.

- USA 5.2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will not be liable to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for any charges unpaid by the customer. In the case of a customer failing to pay the bill for whatever reason,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will inform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of this within a mutually agreed period.
- 5.3 After a mutually agreed period,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may withdraw single-point billing and should promptly notify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providing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with the appropriate information.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will reimburse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for any sums received from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amounts due from the customer which it had been unable to collect.

- R 12 5.4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may reserve the possibility of levying a special charge on the customer to recover any additional cost it has incurred, for example, processing costs of ~~single point billing or networking~~.

#### 6. Inter-administration settlements

- R 12 6.1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will pay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for the amounts billed on their behalf in an agreed time frame. Payments will be made in the national currency of each participating administration or, in another mutually agreed currency.

- USA 6.2 Settlements between administrations should normally be made by bank transfer or by other means agreed between administrations in order to identify customers, related bills and payments.

#### 7. Cancellation

- R 12 6.3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cancellation of the lease are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administrations concern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notice requirement. The customer should be advised of these provisions in advance.

#### 8. Allowance for service interruption

- R 12 6.4 The coordinating administration should reach agreement with the participating administration(s) as to when an allowance is applicable to the customer, and for which period of time.
-